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및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고시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 · 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 · 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기준”에 따르며, 재질 · 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 · 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 · 구조개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123호, 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29일까지로 한다.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 · 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잠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 · 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 · 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2.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 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2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 · 구조)	(3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 · 구조)

- ※ '2등급' 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 '3등급' 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 · 구조가 있는 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
- ※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는 재활용 현장여건과 이들 제품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몸체	실리카 증착 등 투명필름 차단제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별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는 1등급으로 평가
	알루미늄 첩합			○		
잡자재	합성수지 재질 빨대	○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		

2.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몸체	재질	소다석회	○				
		유백유리				○	
	색상	무색, 갈색, 녹색	○				
		기타 색상				○	
라벨	종이 재질		○				
	합성수지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인쇄	무색 외의 병	○				
		무색병				○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	재활용공정에서 제거 가능한 경우 2등급으로 평가	
마개 / 잡자재	몸체와 분리되는 경우		○				마개·테 일체형 등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	마개·테 분리형 등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마개 제외

3. 금속캔 포장재

재질 · 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몸체	철 캔 ^{주1)} , 알루미늄 캔		○			
	에어로졸 용기			○		
	납땜캔				○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분리배출 홍보	○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마개 / 뚜껑	몸체와 동일한 재질		○			
	합성수지 재질			○		알루미늄 마개에 도포된 경우 포함
	EOE 텀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소비자 사용 시
		몸체와 분리 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주1) 철 캔은 구성항목과 상관없이 다른 재질과 혼용하여도 재활용 용이

4. 발포합성수지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주1)}

재질 · 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	○				
		복합재질			○		
		기타 재질과의 조합			○	접합 등	
	색상	백색	○				
		백색 외 색상		○		유색 코팅 포함	
마개 / 라벨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주2)}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주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 · 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 · 복합재질 완충재, 폴리스티렌페이퍼를 말함

주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용이



5.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 · 구조			재활용 용이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 ^{주1)}	○			
		PVC 계열의 재질 ^{주2)}			○	
	색상	검은색 계열 이외 색상	○			
		검은색 계열의 색상			○	
	합성수지의 재질인 경우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PVC재질 및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6.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재질 · 구조			재활용 용이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단일재질 ^{주1)}		○			
	PVC 계열의 재질 ^{주2)}				○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 외	합성수지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7.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 · 필름 · 시트형 포장재^{주1)}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 · 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몸체	무색단일재질		○			
	유색단일재질			(녹색) (하늘색 ^{주1)}) (갈색 ^{주2)})	○	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복합재질				○	갈색 복합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라벨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수분리성 접(점)착식	○			
		비수분리성 접(점)착식 ^{주3)}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분리배출 홍보 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접(점)착식			○	
	몸체에 직접인쇄				○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 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마개 / 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 금속 마개, PVC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 · 고무 · 금속 등				○	

- 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옅은 파란색을 말함
 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
 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

8. PET병 포장재

재질 · 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몸체	합성수지 재질의 복합재질		○			
	알루미늄 증착		○			
	PVC 계열의 재질 ^{주2)}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	
라벨 / 마개 / 잡자재	합성수지의 단일 · 복합재질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에 대한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 ·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 ·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 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 결과서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인증제도 추진성과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2014-124호, 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29일까지로 한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